

보도자료

矿人, 对抗观查! 서울을 국민의 나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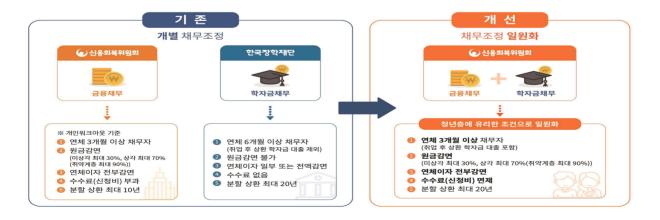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5. 3	1.(화) 국무회의 종료 후
담당 부서	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 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최범석 (02-2100-2612)

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
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

1 개정 배경

- □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'21.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
 - 동 협약을 기반으로 **신용회복위원회는 '22.1월**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**통합 채무조정을 시행**하고 있으며, **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**는 기존에 비해 **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***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* (기존) 원금감면 불가,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부감면 (개선) 원금감면(최대 30%),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



□ 금융위원회는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「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입법예고('22.3월) 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

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-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**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**하였습니다.(안 제55조)
 - 한국장학재단은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체결대상이 아니었으나, 금번 개정을 통해 의무 체결대상기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- ②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"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"의 연체 관련 자료·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(안 제59조)
 -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"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"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관련 자료·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
 - 금번 개정을 통해 **신용회복위원회**가 해당 자료를 **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 장학재단에 요청**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**편의성을 제고**하였습니다.

3 향후 계획

- □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
- ※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(www.ccrs.or.kr), 앱(APP), 콜센터「☎1600-5500」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